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오중석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90
----------	-----

발의년월일 : 2019년 1월 31일

발 의 자 : 오중석 의원 (1명)

찬 성 자 : 김화숙, 이상훈, 한기영, 신정호,
경만선, 문장길, 노승재, 김태호,
이경선, 강동길 의원 (10명)

1. 제안이유

- 최근 도시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와 관련된 시장도 점차 확대되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이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업추진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소형·저속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가이드라인의 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안 제5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을 명시하고,
 - 조례안 제6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지구 조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조례안 제7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 조례안 제8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 ※ 다만, 제5조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대상과 금액 등이 불확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우며, 제7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은 기 추진 사업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서울시 예산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16	2017	세부내역
녹색교통진흥지역 운영	1,994,000	1,648,800	사무관리비 : 139,800 시설관리비 : 1,506,000 - 개인형 이동장치 <u>가이드라인</u> 용역 (290,000) 감리비 : 3,000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0억원 미만

나. 추계결과 ≍ 907,838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 총10억원 미만
- 추계의 전제
 -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지구 조성 및 실태조사는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실태조사 비용은 '드론산업 실태조사' 비용(5천만원)을 기준으로 작성함
 -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지구 조성기간 6개월, 운영기간 6개월로 가정함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907,838천원

= (2019년)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지구 조성사업비 + 실태조사비용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2019	2020						
세입	-	-	-	-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세출	조례안 제6조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지구 조성사업비	857,838	-	-	-	-	-	857,838
	조례안 제8조	개인형 이동장치 실태조사비용	50,000	-	-	-	-	-	50,000
	소계(b)		907,838	-	-	-	-	-	907,838
□ 총 비용(b-a)			907,838	-	-	-	-	-	907,838

○ (2019년)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지구 조성사업비 ≍ 857,838천원

= 시설비 + 운영비

= 548,779천원 + 309,059천원

※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지구 조성 예산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건 명	산 출 내 역	산출금액
계			857,838천원
시설비	개인형 이동장치	①개인형 이동장치 도로 정비	548,779천원

예산과목	건 명	산 출 내 역	산출금액
	시범지구 조성	- 31,000원/㎡×6,740㎡(도로 포장) + 2,800원/㎡×6,740㎡(철거) = 227,812,000원 ②안전시설물 설치 - 160,000원/m×140m(보호펜스) + 133,000원/개소×55개소(표지판) = 29,715,000원 ③대여소, 안전교육장, 시승체험장 컨테이너 설치 - 11,000,000원×4개소 = 44,000,000원 ④부대공사 - 순공사비×0.3% = 90,458,100원 ⑤제잡비 - (순공사비 + 부대공사비)×0.4 = 156,794,041원	
공공운영비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지구 운영	①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 40대×140,000원*6개월(전동킥보드) + 20대×100,000원*6개월(전동이륜평행차) = 45,600,000원 ②대여소, 안전교육장, 체험장, 주행코스 인건비 - (9명×80,000원 + 2명×100,000원)×5일(주중)×26주 + (18명×80,000원 + 4명×100,000원)×2일(주말)×26주 = 215,280,000원 ③기획·운영 대행비 - 5,000,000원/월×6개월 = 30,000,000원 ④표지판 및 펜스, 경광봉, 현수막 등 집기 구매 - 18,178,600원	309,059천원

※ 자료 : 서울시 제출자료(2018.12.5.)

○ (2019년) 개인형 이동장치 실태조사비용 ≍ 50,000천원

※ 2018년도 드론산업 실태조사 비용(5천만원)을 준용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석관(주무관) 박종철
 ☎ 02-2180-7943
 e-mail : pjc99@seoul.go.kr